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December 04 2023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OECD: 2022년 상호합의절차(MAP) 통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는 133개 관할권 및 전 세계 거의 모든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이하 'MAP') 케이스들을 대상으로 한 최신 MAP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2022년 MAP 통계는 다음과 같은 추세를 나타냅니다:

- **납세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MAP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개시된 MAP 케이스는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약 3% 증가했습니다. 이는 MAP이 개시된 케이스가 감소한 2021년 이후 많은 관할당국(Competent Authorities, 이하 'CA')에서 MAP이 통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납세자들이 BEPS Action 14 Minimum Standard의 영향으로 향상된 가용성과 접근성으로 인해 MAP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반면, 2022년에는 종결된 MAP 케이스는 줄어 들었습니다.** 2021년 대비 2022년에 종결된 MAP 케이스는 약 4% 감소하였으며, 이는 종결된 이전가격 케이스(-0.5%)와 기타 케이스(약 -6.5%)를 포함합니다. 2021년에 많은 CA가 간단한 케이스들을 우선순위에 두어 케이스 종결 건수가 두드러진 해였다면(2020

년 대비 13%증가), 2022년 실적은 MAP 케이스 종결 건수가 기준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약 9%증가)과 2019년(3.5%증가)에 비해서는 여전히 큰 증가세를 보입니다.

• **MAP 결과는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2022년 체결된 MAP의 약 73%는 이전가격 및 기타 케이스의 이슈를 완전하게 해소하였습니다. 약 2%의 MAP 케이스들은 합의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두 수치 모두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 **평균 케이스 처리 시간이 목표 기간인 24개월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종결된 MAP 케이스는 2021년 26개월에 비해 평균 25.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해당 결과는 납세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MAP을 하고 있지만, CA가 보다 충분한 자원과 향상된 케이스 관리 능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이는 전반적으로 자원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관할 당국이 CA 기능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CA의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수여하는 MAP 어워드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네덜란드, 뉴질랜드:** 각각 이전가격 케이스 및 기타 케이스를 최단 기간 내에 종결함.
- **캐나다:** 2016년 이전 개시하였으나 종결되지 않은 케이스 비중이 가장 적음.
-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가장 효과적으로 케이스 건수를 관리함.

공동 케이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한 관할권 페어(pair)에게 수여하는 상의 경우 **덴마크-아일랜드**, 기타 케이스의 경우 **독일-아일랜드**가 수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개선된 관할권에 대한 상은 이전가격 및 기타 케이스 모두에서 2021년 대비 102건의 추가 케이스를 긍정적인 결과로 종결한 **네덜란드**가 수상하였습니다.

독일: 독일 연방 하원의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 시행 관련 법안 통과

2023년 11월 10일, 독일 연방 하원(Bundestag)은 결의안(BT-Drs. 20/9190(신규))에서 권고된 바와 같이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Two) 및 기타 동반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EU의회 지침(2022/2523) 이행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독일 상법(HGB) 및 시행령(EGHGB)에 대한 개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 국제회계기준에 의거하여, 독일 상법(HGB) 개정안 초안은 최저한세 관련 법률 또는 해외의 최저한세 관련 법률의 적용에 따른 이연법인세 인식을 면제하는 것이었습니다.
- 또한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최소한의 투명성과 정보를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재무제표와 연결 재무제표 주석에 다음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주석 공시내용은 최저한세 관련 법률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해외 최저한세 관련 법률로 인하여 발생하는 실제적인 부담세액 또는 과세소득에 관한 것으로서 아직 시행되지 않은 최저한세 법률의 적용에 따른 예상효과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제공됩니다.

- 동 주식공시는 2023년 12월 30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개별 및 연결 재무제표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동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법률은 독일 연방 상원(Bundesrat)을 통과한 후 공포되어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조심 2023 서 3417 (2023.11.09)

제목: 쟁점재화 및 용역에 대한 이전가격을 과소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1) 처분개요 및 주요 사실관계

-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인 BBB는 모두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아래와 같이 DDD에 대해 완제품 판매와 필름교체용역을 공급하고 있음

2016.11~2017.07 : BBB → EEE(현지 제3자 등록업체) → DDD

2017.07~2017.12 : 청구법인 & BBB → GGG(EEE자회사) → EEE → DDD

2018.01~2018.중순 : 청구법인 & BBB → HHH(BBB자회사, 재판매) → DDD

2018.중순~ : 청구법인 & BBB(재공품, 완제품) → HHH(완제품제조, 재판매) → DDD

- 2022년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처분청은 하기 사유에 따라 세액을 경정 및 고지함
 - ① 청구법인이 EEE에게 11.61%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음에도, 특수관계법인인 HHH에게 귀속된 마진율은 20%인 것으로 확인하여, EEE와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HHH 간의 거래금액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설정되었다고 간주하여 익금산입
 - ② 청구법인이 HHH에게 제조기술을 이전하였음에도 제조기술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한 동일 제품군의 제조기술사용료 3%의 거래사례(OOO대학교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III 간의 2006.12.1. 자 기술이전계약)를 정상가격으로 적용하여 익금산입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HHH간 재공품의 정상가격에 대해 청구법인-EEE와의 거래가격을 비교가능한 제3자 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취소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익금산입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여 감액경정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2) 쟁점

- ① 쟁점재화 및 용역에 대한 이전가격을 과소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② 쟁점재화 및 용역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의견
<p>1. 청구법인-HHH간 거래와 청구법인-EEE간 거래는 경제여건 등에서 큰 차이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DD는 청구법인에게 반드시 EEE를 통해서만 공급해야 한다고 요구하여 10년 계약을 맺었으나, 추후 어렵게 DDD를 설득하여 자회사인 HHH 설립함. 그러나 HHH 설립직후부터 DDD는 급격한 단가인하를 시작하여 청구법인 및 HHH는 사업 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 - EEE에게 공급 당시에는 청구법인만이 높은 기술력으로 독점공급할 수 있었으나, <u>청구법인이 HHH와 거래할 당시에는 다수의 경쟁업체 유입, DDD에 의한 납품수량 대폭 축소 및 단가 대폭 인하 등 경제상황이 상이</u> - EEE의 3개월치 완제품 총마진이 HHH의 18개월치 총마진보다 높으므로 과세논리가 자의적임 - <u>제품상이</u>: 청구법인이 HHH에 납품한 완제품은 과거 EEE에 납품한 완제품과 종류가 전혀 다름 - <u>기능상이</u>: EEE는 검수활동만을 수행하였으나, HHH는 재공품을 받아 제조하는 활동도 수행가능. EEE는 불합격품에 대해 청구법인이 대응하였으나, HHH는 직접 대체품을 납품 등 대응가능 	<p>1. 청구법인-EEE간 판매수수료율 12%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으로, 정당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법인은 EEE(GGG)에게 12%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HHH에게 공급하면서는 수수료율이 20%가 되도록 공급가액을 낮게 조정함 - 청구법인이 HHH에 공급한 완제품/용역과 EEE(GGG)에 공급한 완제품/용역은 거래 동질성, 거래품목, 수행기능 및 위험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동일함. - HHH가 제조업체이나, DDD에 공급하는 과정에서는 EEE와 동일한 단순통관/배송업무만을 수행함.

<p>2. HHH가 사용하지도 않은 기술에 대해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없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3%의 기술사용료가 합리적인 근거도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DD가 발주하는 제품의 반제품인 필름을 제조시 핵심기술은 "OOO 패턴 제작능력"인데, 이는 청구법인만이 보유하고 있으며, HHH는 위 기술뿐 아니라 해당 필름 제작능력이 아예 없음. 따라서 HHH는 해당 기술을 사용한 적이 없음 - 처분청이 제시하는 3%는 OOO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06년경 주식회사 III의 의뢰로 OOO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2011년까지 제품 총매출 3%의 요율을 적용하여 로열티를 받기로 한 계약서를 근거로 함. 해당 계약서는 12-13년 전에 체결된 것이고, 계약당사자 간 관계, 사업내용 등 어떠한 것도 유사하다는 근거가 없음. 처분청은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서의 유사성을 입증하거나 조정절차도 전혀 없이 주장함. 	<p>2. 청구법인이 HHH에 제공한 무형자산은 재공품(필름)의 독점권과 제조공정기술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법인이 직원들을 파견하여 직접 교육한 기술을 전수하여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사용됨 - 제조기술을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동 재공품(필름)의 사용처가 DDD에만 제한되어 있고 독점 매수권을 부여받았다면, HHH는 기술전수와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기술사용료를 수수해야 함. - 정상가격으로 판단한 3%는 청구법인 영업이익률 64%(2017년)에 비해 전혀 높은 비율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재공품(필름)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전혀 자료제출하지 않음
---	---

4) 판단

- ① 과세관청은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필요시 합리적인 차이조정을 통해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6127 판결 참조)인 점, 청구법인과 HHH 간의 전체마진은 EEE(GGG)간의 전체마진의 78% 수준에 불과한바, 비교대상업체와 거래할 당시와는 경제상황이 상이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EEE(GGG)과 HHH이 완제품 및 FFF에 대한 단순 통관·검수·배송 등 업무만을 수행한 점에 비추어 공급물량의 크기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단순히 해당 마진(매출총이익)으로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EEE의 매출총이익률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이 건은 영업비용 등을 반영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조사하는 것이 필요함
- ② 청구법인이 직원들을 파견하여 직접 현지 직원들에게 교육을 통해 전수한 완제품 제조공정기술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비록 청구법인이 재공품(필름)의 제조기술을 이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 재공품(필름)의 사용처가 DDD에 공급하는 완제품으로만 제한되어 있고, 독점 매수권을 부여 받았다면, HHH은 기술전수와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점,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비교가능성이 있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이 신뢰할 만한 수치로서 여러 개 존재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과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의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은 동일한 제품군의 제조기술인 제조방법에 대한 기술사용료 수수사례를 수

집하여 비교대상 제3자가격(CUP)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3%로 판단하였고, 달리 청구 법인이 위 가격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거나 보다 합리적인 제3자가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03 관세

관세청, 수출물품 주요 검증 동향 발표

1)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요청현황

(1) FTA 원산지검증 현황

- 관세청은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동향(2023.11)」을 발표하며 최근 튀르키예, EU, 인도, 아세안의 FTA 원산지 검증요청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힘. 이들 국가들은 협정문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PSR)”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함. 국가별 주요 원산지검증 요청 사유로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의심(튀르키예), 인증수출자 유효성 의심(EU), 원산지증명서의 내용 기재 오류(아세안) 등이 있음.

(2) 비특혜 원산지 검증 현황

- 비특혜 원산지 검증이란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대중 보복관세 등 비특혜 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원산지 검증으로, 그 성격이 특혜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FTA 원산지 검증과 다소 상이함.
- 비특혜 검증은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검증요청이 접수되고 있으나, 최근 EU가 중국산 물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위해 중국산 물품의 한국 우회수출 의심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원산지 조사를 요청 중에 있음.

2) 협정별 주요 검증 동향

(1) 한-튀르키예

- 튀르키예는 FTA 체결국 중 국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가장 많이 요청하는 국가 중 하나로, 화학공업제품(합성수지), 섬유류(직물), 기계류(금속공작기계) 등에 대한 검증 요청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주로 원산지신고서의 진위 여부 및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검증을 요청함. 튀르키예의 경우 검증 결과가 '불충족'으로 회신되면, 특혜 배제뿐만 아니라 수입자에 대한 벌금 부과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함.

(2) 한-EU FTA

- EU 회원국 중 주요 검증 요청국가는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으로 최근 3년간 27개 EU회원국 전체로부터 다양하게 검증 요청이 접수되었음. 주요 검증 요청 품목은 섬유류(직물), 기계류(전기자전거), 화학공업제품(합성수지) 등이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원산지신고서 진위 여부, 인증수출자 지위 유효 여부에 관한 합리적 의심으로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
- 최근 한-EU FTA 관련하여, 미인증수출자가 C/O를 발급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수출자가 C/O를 발급하는 등 인증수출자 관련 C/O 부적정 발급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음. EU 각국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번호 조회 시스템(관세청 FTA포털 內)을 활용하여 국내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유효 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함.

(3) 한-인도 CEPA

- 인도의 경우 2021년 인도의 원산지기준 심사 강화 조치 이후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요청이 급격하게 증가했으나, 2022년부터는 기존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인도는 주로 전자전기제품(통신기기 부품), 화학공업제품(합성수지), 기계류(공구, 펌프 등) 등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검증 요청함.
- 인도 관세당국은 특히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 확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수출물품의 부가가치 계산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4) 한-아세안 FTA

- 주요 검증 요청국가는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으로 최근 3년간 아세안 회원국 10개국 중 4개 회원국으로부터 검증요청이 접수됨.
- 한-아세안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내용 기재 오류를 이유로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요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기재 사항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태국 관세당국은 물품의 품목분류(HS Code) 정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태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HS Code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세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할 것이 권장됨.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 02-2112-0696

T. 02-2112-0907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